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163호(號) 1934(昭和 9)년 3월 29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42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4(昭和 9)년 3월 2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쌀[米]
- 2 발 역(發 驛) 진주(晉州), 남문산(南文山), 함안(咸安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2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수하[荷受]한 경우  
보통임륜(普通賃率) 2할(割) 5푼(分) 감(減)  
3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수하[荷受]의 경우  
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3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4(昭和 9)년 4월 1일부터  
1935(昭和 10)년 3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소정(所定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해 특정구간통계(特定區間通計) 전(前) 기  
재수량(記載數量) 이상(以上)을 수하[荷受]한 자(者)에 대(對)해 기수운임  
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 
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